

학보사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 본사는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부속 “대신대학교 학보사”(이하 “본사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 본사는 본교의 공기(公器)로서

1. 건전하고 참신한 학내 여론의 창달(暢達)을 기(期)함과 아울러
2. 전문 지식과 교양증진을 도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인의 화합과
3. 본교의 신학노선과 학풍을 진작(振作)시키고 선교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사업) 본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“대신대학보” 발간
2. 본교 및 본사와 관련된 학술 문화 활동 개최
3. 기타 본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

제 4조(위치) 본사는 본교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직무

제 5조(조직) 본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을 둔다.

1. 사장(1인)
2. 주간(1인)
3. 운영위원(5인 이하)
4. 편집지도교수 및 감사(1인)
5. 학생 편집국장(1인)
6. 논설위원(약간 명)
7. 각 부장(약간 명)
8. 학생기자(7인 이내)

제 6조(사장) 본사의 사장은 본교 총장이 당연직으로서 본사의 발행인이 되며 본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(統括)한다.

제 7조(주간) ① 본사의 주간은 본교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.
② 주간은 본보(本報)의 편집인 겸 주간이 되며 본사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
제 8조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주간과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는 4인 이하로 구성하며, 본사 운영 전반을 심의한다.

제 9조(편집지도교수 및 감사) 사장이 운영위원 가운데 주간의 제청으로 1인을 편집지도교수 및 감사로 위촉하며, 학보편집 지도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(학생 편집국장) ① 3학년 기자들 가운데서 기자들의 추천과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한다(단, 3학년 기자가 없을 시에는 2학년 기자들 가운데서 임명한다).

② 학생편집국장은 본사의 행정업무 및 신문제작에 관한 편집기획을 편집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총괄하고 기자들의 대표가 된다.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.

제11조(논설위원) 논설위원은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각 부장) 각 부의 부장은 학생 기자들 중 학생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.

제13조(학생기자) ① 수습기자는 재학생들 중 입사시험을 거쳐 공개 채용을 하되 학생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. 단, 컷과 사진부는 입사시험 없이 특채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학생기자는 수습기자들 중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로서 각 부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편집국장이 제청하고 주간이 임명한다(단, 재학생들 가운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생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학생기자로 임명할 수 있다).

③ 학생 기자의 임기는 최종학년 1학기말로 한다.

제3장 회의

제14조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주간이 위원장이 되며, 본사의 예산, 결산, 사규(社規)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전반을 심의 결정한다.

제15조(편집회의) 편집회의는 주간과 편집지도교수 및 학생편집국장 그리고 각 부장들과 편집 기자들로 구성한다. 편집회의는 편집지도교수의 주재로 본보(本報) 제작 편집 및 배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협의한다.

제16조(시행세칙) 본 사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장 학생기자의 의무

제17조(의무 및 자세) 기자는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에 전력을 기울이며, 기자의 신양 양심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(동아리 가입) 기자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5장 재정

제18조(수입재원) 본사의 재정은 본교의 지원금, 기부금,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19조(예산, 결산) 예산과 결산은 매 학년말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재정관련 주무 부서에서 이를 관할한다.

제6장 상벌

제20조(감사) 자체정기 감사는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.

제21조(표창) 사장은 본사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주간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.

제22조(장학금 및 수당) 사장은 학생 편집국장, 각 부장 및 기자들(수습기자는 제외)에게 장학금 및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. 단 장학금 및 수당에 관한 내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제23조(징계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기자에게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
2.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자
3. 사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
4. 고의 또는 과실로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